

# 홍콩거래소(HKEX)의 기업지배구조 모범기준과 E.S.G. 보고 가이드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박기령

Hong Kong

# 홍콩거래소(HKEX)의 기업지배구조 모범기준과 E.S.G. 보고 가이드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박기령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

## 요약문

## S U M M A R Y

전세계적으로 E.S.G.가 기업 공시와 경영의 화두로 부상하는 가운데, 거래소 등 자율규제기관을 중심으로 E.S.G.의 핵심 쟁점 중 하나인 지배구조와 관련하여 공시체계를 재구성하는 제도개선 움직임이 최근 관찰된다. 특히 홍콩거래소(HKEX, Hong Kong Exchanges)는 1993년부터 기업지배구조 개선에 관한 실무규약(Code of Best Practice for listed issuers)을 도입한 이래, 최근 E.S.G. 논의를 반영하여 E.S.G. 보고 가이드(Environmental, Social and Governance Reporting Guide)와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Corporate Governance Code)을 개정하여 E.S.G. 관련 공시를 강화·확대하였다. 본 이슈페이퍼는 홍콩거래소의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과 E.S.G. 보고 가이드에 도입된 E.S.G. 관련 공시제도 개선 논의를 살펴봄으로써, 우리나라 금융시장의 E.S.G. 공시 제도 구축의 시사점을 찾아보고자 한다.



# 목차

## CONTENTS

\* 이 책자의 내용은 본원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

\*\* 이 책자의 내용을 인용할 경우, 박기령, 홍콩거래소(HKEX)의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과 E.S.G. 보고 가이드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한국법제연구원 이슈페이퍼 23-19-④ (2023), ○○면을 표기하여야 합니다.

\*\*\* 본원의 승인없이 전재 및 역재를 금합니다.

# 홍콩거래소(HKEX)의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과 E.S.G. 보고 가이드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I. 서설	07
II. 홍콩거래소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과 E.S.G. 보고 제도의 정착	09
III. 홍콩거래소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 및 E.S.G. 보고 가이드의 주요 내용	12
1. HKEX의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Corporate Governance Code)의 체계와 주요 내용	12
2. HKEX E.S.G. 보고 가이드의 체계와 주요 내용	23
IV. 시사점	31
참고문헌	33

홍콩거래소(HKEX)의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과 E.S.G. 보고 가이드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

# I.

## 서설

### □ 홍콩거래소의 경쟁력 및 향후 전망

- 홍콩은 아시아 지역에서 가장 큰 금융중심지 중 하나로서의 지위를 공고히 유지해왔으나, 2020년 7월 중국 당국의 홍콩보안법 시행으로 홍콩의 미래에 대한 부정적 전망이 대두되었고, 더욱이 미국을 선두로 서방 국가의 제재안이 발표되자 홍콩에 진출한 글로벌 기업들 중 홍콩 이외의 지역으로 아시아 지역본부를 이전하려는 움직임도 상당수 있었음.<sup>1)</sup>
- 금융중심지와 증권거래소의 유기적 관계를 고려하여 홍콩거래소의 최근 상황을 살펴보면 홍콩보안법의 시행과 미·중 갈등 심화에도 불구하고, 홍콩거래소의 경쟁력과 중요성은 지속적으로 부각됨.
- 양적 측면에서 홍콩거래소의 상장기업수가 가파르게 증가하면서 한국거래소(KRX)를 추월하여 일본거래소(JPX)와 격차를 줄이면서, 특히 홍콩의 금융중심지 기능을 대체할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던 싱가포르의 싱가포르거래소(SGX)의 상장기업수가 계속 감소하면서 홍콩거래소와 대조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음.
  - 전체 상장기업의 시가총액도 홍콩거래소는 2010년대 후반부터 급격히 증가하면서 정체상태에 머물고 있는 싱가포르거래소와 차이가 커지고 있는 바,<sup>2)</sup> 홍콩거래소의 성장에는 선진자본시장에 접근하려는 중국 테크기업의 유입이 큰 역할을 했음.<sup>3)</sup>
- 한편 홍콩거래소는 기업의 환경(Environmental), 사회(Social) 및 지배구조(Governance)(이하, E.S.G.)

1) 남길남, "금융중심지 기능과 증권거래소의 경쟁력", 자본시장포커스 2020-17호, 자본시장연구원(2020.08.), 1면.

2) 남길남, 위의 자료, 3면.

3) 2020년 상반기 IPO 실적은 홍콩거래소가 112억 달러로, 53억 달러의 뉴욕증권거래소를 추월하여, 170억 달러의 IPO 실적을 낸 나스닥(NASDAQ)의 뒤를 쫓고 있다. 남길남, 위의 자료, 4면.



기준을 국제적 표준으로 설정하기 위한 제도개선 논의를 일찍부터 시작했으며, 최근 E.S.G. 관련 보고를 의무화하고, 보고·공시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거래소에서의 E.S.G. 공시를 위한 규범 설계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

- 본 글은 중국의 경제성장을 등에 업고 경쟁력을 키워가고 있는 홍콩거래소의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과 E.S.G. 보고 가이드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 우리 주식시장의 E.S.G. 공시 제도 정착을 위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함.

## II.

# 홍콩거래소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과 E.S.G. 보고 제도의 정착

### □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Corporate Governance Code)의 체계화

- 홍콩거래소(Hong Kong Exchanges, 이하 HKEX)는 기업지배구조 개선과 경영투명성 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1993년 상장회사 실무규약(Code of Best Practice for listed issuers)을 발간함.<sup>4)</sup>
  - 그 이후 2005년 기업지배구조보고서를 위한 기업지배구조 실무 및 규정에 관한 규준(the Code of Corporate Governance Practices and Rules on the Corporate Governance Report)으로 대체하였고, 2012년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Corporate Governance Code)<sup>5)</sup>으로 개편하여, 2014년, 2021년에 E.S.G.를 중심으로 개정됨.<sup>6)</sup>
  - 현재 HKEX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은 2021년 개정되어 2022년 1월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일부 규정, 특히 사외이사(independent non-executive director, INED)의 임기를 9년으로 한정하고, 사외이사가 9년 이상 근무하면 사외이사를 새로 선임하도록 하는 규정은 2023년 1월에 시행될 예정임.

4) Syren JOHNSTONE and Say H GOO, "Report on Improving Corporate Governance in Hong Kong - A comparative based study -", The Hong Kong Institute of Certified Public Accountants, 2017. 12.

5) HKEX 상장규정 대부분은 의무규정(mandatory)이지만,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은 "원칙준수-예외설명"("comply or explain")을 기반으로 하므로, HKEX에 상장하는 발행회사는 기업지배구조 규준의 준수(comply) 또는 설명(explain) 여부를 선택할 수는 있고, 동 모범규준의 조항을 준수하지 않고, 설명하기로 한다고 하여, 상장규정 위반이 되는 것은 아니므로, 이 글에서는 Corporate Governance Code를 의무규정인 상장규정과 구분하여 '모범규준'이라는 용어로 사용하기로 한다. 다만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 중 공시사항은 의무규정으로서 준수(comply)해야 한다.

6) HKEX는 메인보드(대형주)와 GEM(중소형주) 2개의 시장으로 나뉘어 있는데, 두 시장 모두 기업지배구조 규준(Corporate Governance Code)을 두고 있다. 다만 메인보드에 상장된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이 GEM에 상장된 중소기업에 적용되는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의 규정보다 많은 규정을 두고 있는 바, 이 글은 HKEX 메인보드의 기업지배구조 규준과 E.S.G. 보고 가이드를 중심으로 정리한 것임을 미리 밝혀둔다.

□ E.S.G. 보고 가이드(E.S.G. Reporting Guide)의 규범화

- HKEX는 기업의 E.S.G.에 관한 기업의 정보 공시의 기준을 국제적 표준으로 설정하기 위한 제도개선 논의를 일찍부터 시작했으며, 2012년 홍콩증권거래소(이하, HKEX)에 E.S.G. 보고 가이드(Environmental, Social and Governance Reporting Guide, 이하 ‘E.S.G. 보고 가이드’)를 자율공시 방식으로 도입하였음.
  - 2015년 시장과 협의하여, 2016년부터는 E.S.G. 보고 가이드를 상장규정 부록 제27번(Appendix 27, Environmental, Social and Governance Reporting Guide)으로 편입)하고, “준수 또는 설명(Comply or Explain, CoE)”방식으로 의무화함.<sup>8)</sup>
- HKEX는 2019년 UN PRI 보고서를 통해, E.S.G. 공시와 관련하여 (i) 이사회의 E.S.G. 관리 역할, (ii) 기후 관련 중요 이슈가 발행회사에 영향을 미친 사실 및 향후 미래에 미칠 영향, (iii) 환경성과지표(KPI, Key Performance Indicator)를 수정한 관련 목표 공시, (iv) 모든 사회(social) 성과지표의 공시무무를 “준수 또는 설명”단계로 제고하고, (v) E.S.G. 보고서의 공표 기한을 재무연도 종료 후 5개월 이내로 단축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E.S.G. 공시 강화 방향을 발표함.<sup>9)</sup>

□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과 E.S.G. 보고 가이드(E.S.G. Reporting Guide)의 연계

- E.S.G. 가이드는 주로 환경(Environmental)과 사회(Social) 부문을 주로 규정하고 있으며, 기업지배구조 관련 공시는 별도의 상장규정 부록 제14번(Appendix 14, Corporate Governance Code)의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에서 다루고 있음.
  - 따라서 HKEX의 E.S.G.에 관한 공시는 상장규정 부록 제27번의 E.S.G. 보고 가이드와 상장규정 부록 제 14번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을 함께 검토해야 함.
- 기업지배구조와 E.S.G.의 연계<sup>10)</sup>
  - 기업지배구조는 이사회가 기업 경영에 관한 의사결정을 내리고 사업을 운영하는 기본틀에 관한 것인 만큼, 이사회 전체는 주주를 위해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성장을 창출하고 모든 이해 관계자에게 장기적인 가치

7) 2015년 상장규정에 도입된 E.S.G. 보고서는 메인보드에 상장된 기업에 한정되어 적용되었다. 그러나 이후 2020년에 GEM에 상장된 중소기업에도 동일한 내용의 E.S.G. 가이드가 GEM 상장규정에 도입되었다. GEM의 E.S.G. 가이드 상장규정도 2022년에 한 차례 메인보드와 동일한 내용으로 개정되었다.

8) 박준태, “지속가능 성장을 위한 ESG 생태계 조성 및 입법정책 과제”, 국회입법조사처(2021.09), 92면.

9) UN PRI, “ESG DISCLOSURE IN CHINA: MARKET READINESS AND PRI INVESTOR SURVEY”(2019), p.3: [https://www.hkex.com.hk/news/regulatory-announcements/2019/191218news?sc\\_lang=en](https://www.hkex.com.hk/news/regulatory-announcements/2019/191218news?sc_lang=en).

10) HKEX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상장규정 부록 제14번, 개요(Introduction) 중 기업지배구조와 E.S.G.의 연계방향(Linkage between Corporate Governance and Environmental, Social and Governance (“E.S.G.”))

- 를 제공하는 데 집중해야 하는 한편, 효율적인 기업지배구조를 통해 발행회사는 환경 및 사회적 위험과 기회를 포함하여 회사에 대한 장기적인 위험과 기회를 제대로 이해하고, 평가·관리할 수 있음을 명시함.
- HKEX 상장규정 부록 제27번에서 명시된 E.S.G. 보고 가이드는, 발행회사의 이사회는 회사가 어떠한 환경적 위험과 사회적 위험이 문제될 수 있는지를 파악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평가, 관리·감독할 책임이 있음.
  - 따라서 발행회사는 E.S.G. 보고 가이드에 따라 E.S.G. 보고서에 환경적·사회적 위험과 관리 등의 쟁점을 공개해야 함.

### III.

## 홍콩거래소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 및 E.S.G. 보고 가이드의 주요 내용

### 1. HKEX의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Corporate Governance Code)의 체계와 주요 내용

#### 가. 도입부(Part A: Introduction)<sup>11)</sup>

-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은 (a) 발행인의 기업지배구조보고서에 공개하기 위한 의무공시요건 및 (b) 우수한 기업지배구조 원칙, “원칙준수·예외설명”에 기초한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의 준수규정(Code Provisions, 이하 CP) 및 권고적 모범실무(Recommended Best Practices, 이하 RBP)를 명시함.
  - 발행인은 RBP를 자발적으로 채택하도록 권장됨.
- [파트 1 - 의무공시요건] 발행인은 거래소 상장 규칙 부록 16의 제34항 및 제50항에 따라 사업보고서 및 요약재무보고서에 이사회가 작성한 기업지배구조보고서를 포함해야 함.
  - 기업지배구조보고서에는 “파트 1 - 의무공시요건” 부문에 요구하는 모든 정보가 포함되어야 하며, 만약 해당 정보가 제공되지 않으면 거래소 상장 규칙 위반으로 간주됨.
  - 합리적이고 적절한 범위 내에서 발행인의 요약재무보고서에 포함된 기업지배구조보고서는 사업보고서에

11) HKEX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의 Part A는 의무공시요건(Part 1)과 우수한 기업지배구조원칙과 CP, RBP(Part 2)의 총론적 성격으로, Part 1과 Part 2의 체계 전반과 ‘원칙준수 예외설명’의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하는 개요에 해당한다.

포함된 기업지배구조보고서의 요약일 수 있으며, 사업보고서를 참조하여 정보를 통합할 수도 있음.

- 다만 참조는 명확하고 모호하지 않아야 하며, 요약에는 어떤 문제에 대한 논의 없이 상호 참조만 되어서는 안 됨.
- 또한 요약에는 최소한 “파트 2 – 우수한 기업지배구조 원칙, CP 및 RBP” 부문에 명시된 준수규정(Code Provision)의 전반적인 준수 및 차이를 강조하는 설명문이 포함되어야 함.

□ [파트 2 – 우수한 기업지배구조 원칙, CP 및 RBP] 기업지배구조 원칙은 훌륭한 기업지배구조를 달성하기 위한 전반적인 방향을 설정하며, CP는 발행인이 이 원칙을 적용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명시됨.

- 기업지배구조 원칙의 효과적인 적용은 발행인의 개별 상황, 운영의 규모와 복잡성, 직면한 위험과 도전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원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CP와 다르게 선택할 수 있음.
- RBP는 권고적 내용이기 는 하나, 발행인의 원칙 적용을 지원하기 위해 준수해야 하는 모범규준 내지는 관행이 될 수 있음.
  - 발행인은 RBP를 준수했는지 여부를 명시하고 편차에 대해 고려한 이유를 제공하도록 권장되나 의무는 없음.

□ “원칙준수-예외설명(Comply or Explain)”이란 다음을 의미함.

- 발행인은 사업보고서(요약재무보고서 포함) 및 중간보고서(요약중간보고서 포함)에 해당 회계연도에 대한 규정을 준수했는지 여부를 명시해야 함.
- 발행인이 CP에 명시된 것과 다른 방안을 적용하고 기업지배구조 원칙을 채택한 경우 발행인은 다음을 명시해야 함.
  - (a) 사업보고서(요약재무보고서 포함)의 기업지배구조보고서에서 다른 방안을 선택한 이유와 CP를 엄격히 준수하는 것 이외의 수단을 통해 어떻게 우수한 기업지배구조가 달성되었는지 설명하여야 함. 해당 설명에는 발행인이 취한 다른 방안이 결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제공해야 함.
  - (b) 중간보고서(요약중간보고서 포함)에서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해야 함.
    - (i) 다른 방안을 선택한 이유 및 설명
    - (ii) 합리적이고 적절한 범위 내에서 이전 사업보고서의 기업지배구조보고서를 참조하고 고려된 이유 및 설명과 함께 해당 사업보고서에 보고되지 않은 내용에 대한 세부 변경 사항을 제공해야 하며, 발행인이 제공한 고려 사유 및 설명을 평가할 때 주주는 발행인의 개별 상황을 적절히 고려해야 함.

- 발행인이 준수규정(Code Provision, CP)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본 기준에서 제시한 방식으로 CP를 준수하지 않은 이유와 설명을 제시해야 하며, 만일 이러한 이유와 설명을 제시하지 않을 경우 거래소 상장규칙 위반이 될 수 있음.

#### 나. 의무공시요건(Part 1: Mandatory Disclosure Requirements)

- 투명한 정보공개를 위하여 발행인은 연차보고서에서 다루는 회계기간부터 연차보고서 발행일까지 중대한 사건에 대하여 다음 항목들에 대한 정보를 공시하여야 하며, 이하의 내용을 공시하지 않을 경우, 「거래소 상장규칙」을 위반한 것으로 간주됨.
- 기업지배구조준칙(Corporate Governance Practices), 이사회(Board of Directors), 회장 및 최고경영자(Chairman and Chief Executive), 사외이사(Non-Executive Directors), 이사회내 위원회(Board Committees), 회사 간사역(Company Secretary), 이사의 증권 거래(Directors' Securities Transactions), 위험관리 및 내부통제(Risk Management and Internal Control), 감사의 보수 및 감사 관련 사항(Auditor's Remuneration and Auditor Related Matters), 다양성(Diversity), 주주의 권리(Shareholders' Rights), 투자자 대상 홍보 활동(Investor Relations)

[표 1] 항목별 의무공시요건의 구체적인 내용

<p><b>A. 기업지배구조준칙</b></p>	<p>(a) 주주들이 원칙 적용을 평가할 수 있도록 발행사의 원칙 적용 방법을 설명한 명세서                  (b) 발행사가 모범규준 조항을 준수했는지 여부에 관한 확인서                  (c) 모범규준에 벗어난 경우(모범규준 조항이 아닌 대안을 채택한 경우 포함), 해당 회계연도 중 모범규준에 벗어난 사항의 내역(이를 고려한 이유 및 설명 포함)</p>
<p><b>B. 이사회</b></p>	<p>(a) 이사 유형별 이사회의 구성. 회장, 상임이사, 비상임이사 및 사외 비상임이사의 성명을 포함한다.                  (b) 해당 회계연도 중 개최된 이사회의 횟수                  (c) 이사회 및 주주총회에 출석한 이사의 성명                  주: 1. 발행사의 정관과 회사 설립지의 법규에 따라 전화 또는 화상 회의와 같은 전자수단을 통한 이사의 회의 출석도 물리적 출석으로 간주할 수 있다.                  2. 이사가 회계연도 중간에 임명된 경우, 그 이사의 출석은 그 이사의 임기 동안 개최된 이사회의 횟수를 기준으로 기재한다.                  (d) 각 이사가 출석한 이사회 또는 위원회 회의의 횟수와 그 이사의 직무대행자가 출석한 이사회 또는 위원회의 횟수(이사 직무대행자의 이사회 또는 위원회 회의 출석은 이사의 출석으로 계산하지 않음)                  (e) 이사회 및 경영진의 책임, 책무 및 기여에 관한 명세서.(특히, 이사회 운영 방법에 관한 명세서. 이사회가 내린 결정의 종류와 경영진에 위임한 결정의 종류에 관한 사업 개요서를 포함)                  (f) 규칙 제3.10조(1) 및 (2)와 제3.10A조의 불이행 내역과 불이행을 시정하기 위하여 행한 시정 조치에 관한 설명.(여기에는 충분한 수의 사외 비상임이사를 선임할 의무와 적절한 전문 자격이나 회계 또는 관련 재무 관리 전문성을 갖춘 사외 비상임이사를 선임할 의무의 불이행도 포함해야 함)                  (g) 사외 비상임이사가 규칙 제3.13조에 명시된 독립성 평가 기준을 1개 이상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 그 사외 비상임이사가 독립적이라고 발행사가 인정한 이유                  (h) 이사회 구성원 간의 관계(재정적 관계, 사업 관계, 가족 관계 또는 그 밖의 주요 관련 관계 포함), 특히 이사회 회장과 최고 경영자 간의 관계                  (i) 모범규준 제C.1.4조에 부합하는 각 이사의 성명</p>
<p><b>C. 회장 및 최고경영자</b></p>	<p>회장 및 최고 경영자의 신상 정보</p>
<p><b>D. 사외이사</b></p>	<p>사외이사의 임기</p>



<p><b>E. 이사회 산하 위원회</b></p>	<p>감사위원회, 보수위원회, 지명위원회, 위험관리위원회 및 기업 지배구조 기능에 관한 다음과 같은 정보</p> <p>(a) 위원회의 역할 및 기능</p> <p>(b) 위원회의 구성 및 위원회가 사외 비상임이사, 비상임이사 및 상임이사로 구성되어 있는지 여부(각 이사의 성명을 포함하고 위원회의 위원장의 신상 정보를 기재한다.)</p> <p>(c) 각종 사안을 토의하기 위하여 해당 연도 중 위원회가 개최한 회의의 횟수 및 해당 연도 중 개최된 회의에 출석한 위원의 명단</p> <p>(d) 해당 연도 중 수행한 업무의 개요. 다음 사항을 포함한다.</p> <p>(i) 감사위원회의 경우에는 분기별(해당되는 경우), 반기별, 연도별 실적 검토 책임의 수행과, 별도의 위험관리위원회나 이사회가 달리 명시적으로 처리한 경우를 제외하고, 위험관리 및 내부통제 체계의 검토, 발행사의 내부감사 기능의 효과 및 「기업 지배구조 모범규준」에 따른 그 밖의 의무에 관한 보고서. 규칙 제3.21조의 불이행 내역(해당되는 경우)과 감사위원회 설립과 함께 불이행을 시정하기 위하여 행한 시정 조치에 관한 설명</p> <p>(ii) 보수위원회의 경우에는 상임이사의 보수에 관한 정책 결정, 상임이사의 실적 평가, 상임이사의 근로계약 조건의 승인, 제17장에 따른 주식 배정계획 관련 사항에 관하여 보수위원회가 수행한 검토 및 승인(규칙 제17.07A조 참조). 모범준칙 제 E.1.2조(c)에 규정된 두 가지 모델의 보수위원회 중 채택한 모델을 공개한다.</p> <p>(iii) 지명위원회의 경우에는 해당 연도 중 이사 지명에 관한 정책의 공개. 여기에는 해당 연도 중 이사 후보를 선정하고 추천하기 위하여 지명위원회가 채택한 지명 절차 및 과정과 기준을 포함한다.</p> <p>(iv) 위험관리위원회가 있는 경우에는 위험관리 및 내부통제 체계의 검토 책임 이행 방법 및 발행사의 내부감사 기능의 효과에 관한 보고서</p> <p>(v) 기업 지배구조와 관련하여, 발행사의 기업 지배구조에 관한 정책 결정 및 이사회나 모범규준 제A.2.1조에 따른 위원회가 수행한 의무</p>
<p><b>F. 회사 간사역</b></p>	<p>(a) 발행사가 외부 서비스 제공자를 회사의 간사로 참여시킨 경우에는 발행사의 주요 회사 연락 담당자(그 담당자의 성명 및 직위 포함)</p> <p>(b) 규칙 제3.29조의 불이행 내역</p>
<p><b>G. 이사의 증권 거래</b></p>	<p>「증권거래소 상장 규칙」 별표 10에 명시된 모범규준과 관련하여,</p> <p>(a) 모범규준에 명시된 기준 이상의 엄격한 조건으로 회사가 이사들의 증권 거래에 관하여 행동규범을 채택했는지를 확인한다.</p> <p>(b) 발행사의 이사가 모범규준 및 이사의 증권 거래에 관한 행동규범에 명시된 필수 기준을 준수했는지 또는 준수하지 아니했는지에 대해 모든 이사에 대해 구체적으로 조사한다.</p> <p>(c) 모범규준에 명시된 필수 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준수하지 아니한 내역 및 발행사가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행한 시정 조치에 관한 설명</p>
<p><b>H. 위험관리 및 내부통제</b></p>	<p>모범규준 제D.2.1조에 따라 자사의 위험관리 및 내부통제 체계의 효과를 검토했다고 기업 지배구조 보고서로 보고하는 경우, 발행사는 다음 사항을 공개해야 함</p> <p>(a) 발행사에 내부감사 기능이 있는지 여부</p> <p>(b) 위험관리 및 내부통제 체계의 검토 주기 및 빈도와 검토 대상 기간</p> <p>(c) 발행사가 자사의 위험관리 및 내부통제 체계가 효과적이고 충분하다고 생각하는지 여부</p>

<p><b>I. 감사의 보수 및 감사 관련 사항</b></p>	<p>감사들(감사기관과 동일한 지배권, 소유권 또는 경영진에 속한 업체나 관련 정보를 숙지하고 사전 정보를 가지고 있는 합리적인 제3자라면 국내적으로 또는 국제적으로 감사기관에 속한 업체라고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업체를 포함한다.)이 발행사에 제공하는 감사 서비스 및 비감사 서비스에 대한 보수의 분석(이 때 그 분석에는 중요한 비감사 서비스 과제별로 그 서비스의 성격과 그 서비스에 대하여 지급한 수수료의 내역을 포함해야 함.)</p>
<p><b>J. 다양성</b></p>	<p>(a) 이사회 다양성에 관한 발행사의 정책이나 그러한 정책의 개요(발행사가 그 정책의 시행을 위하여 정한 측정 가능한 목표를 포함한다.)와 그러한 목표의 달성 정도</p> <p>(b) 다음 사항을 공개하고 설명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i) 이사회 다양성을 달성할 방법과 시기</li> <li>(ii) 이사회 다양성 달성을 위해 설정한 수치적 목표와 일정</li> <li>(iii) 성별 다양성을 달성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승계할 후임자 발굴을 위하여 발행사가 채택한 조치</li> </ul> <p>(c) 인력(고위 경영진 포함)의 성별 비율, 성별 다양성을 달성하고 인력 전반의 성별 다양성 달성을 어렵게 만들거나 의미미하지 아니하게 만드는 요소나 상황을 완화하기 위하여 발행사가 정한 계획이나 측정 가능한 목표</p> <p>주: 이 기업 지배구조 모범규준에서 “고위 경영진”이란 발행사의 연차보고서에 언급된 사람들로서 별표 16 제12조에 따라 공개해야 하는 대상을 포함함.</p>
<p><b>K. 주주의 권리</b></p>	<p>(a) 주주가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하는 방법</p> <p>(b) 이사회에 질의할 수 있는 절차 및 이러한 질의를 이사회에 적절하게 전달하는 데 충분한 연락처 내역</p> <p>(c) 주주총회에 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는 절차와 제안서 제출에 충분한 연락처 내역</p>
<p><b>L. 투자자 대상 홍보 활동</b></p>	<p>(a) 해당 연도 중 발행사 정관의 중대한 변경</p> <p>(b) 발행인의 주주 커뮤니케이션 정책(또는 정책 개요서). 발행사에 영향을 주는 다양한 사안에 대해 주주가 의견을 전달할 수 있는 채널과 주주 및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요청하고 이해하기 위해 발행사가 취한 조치를 포함하여야 한다.</p> <p>(c) 해당 연도 중 시행한 주주 커뮤니케이션 정책의 시행 결과 및 효과에 대한 발행사의 검토서(그 결론에 도달한 방법을 포함한다.)</p>

다. Part 2-우수한 기업지배구조원칙, CP 및 RBP(Part 2 - Principles of good Corporate Governance, CP and RBP)

□ 의무적 공시대상인 Part 1과 달리, 홍콩거래소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의 Part 2는 바람직한 기업지배구조의 정착을 위한 원칙과 준수규정(CP, Code Provisions), 권고적 모범실무(RBP, Recommended Best Practices)에 관한 내용으로, 발행인(issuer)이 우수한 기업지배구조 구축을 위하여 준수해야 할 원칙과 준수해야 할 규정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거래소의 권고와 기업의 재량 범위를 제시함.

□ 기업 목적이나 전략, 거버넌스·기업문화, 이사회 구성 및 선임, 이사의 책임과 이사회 절차, 감사 및 내부통제, 이사의 보수, 주주참여 등을 쟁점으로 원칙과 준수규정, 권고적 모범실무를 세부적으로 정하는 한편, HKEX가 제시한 이들 원칙을 어느 정도로 준수하고, 만일 이를 준수하지 않을 때 기업들이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가에 대하여도 세부적으로 정함.

○ 바람직한 기업문화 정착 및 기업전략 등에 대한 선언적인 원칙부터 이사·감사에 대한 세부적인 준수규정과 권고적 모범실무 모범실무를 다양하게 규정하고 다양하게 규정하고, 필요한 경우 주석(Note)를 추가하여 HKEX가 고려하는 우수한 기업지배구조 기업지배구조를 위한 체계를 구축함.

□ Part 2의 모든 쟁점에서 원칙과 준수규정(CP), 권고적 모범실무(RBP) 규정을 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며, 주로 원칙과 준수규정을 주로 정하고, 감사·내부통제·위험관리 등의 경우에는 권고적 모범실무도 세부적으로 정함.

○ 기업이 자신에게 맞는 내부통제와 위험관리 체계를 구축하도록 하는 한편, 권고적 모범실무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기업의 재량과 HKEX의 자율규제가 융합될 수 있는 지점을 찾은 것으로 볼 수 있음.

□ Part 2, A.는 기업의 목적, 전략 및 거버넌스에 관하여, 기업전략, 사업모델 및 기업문화(Corporate strategy, business model and culture, A.1.)와 기업지배구조의 역할(Corporate Governance Function, A.2.)로 나누어 기업전략과 사업모델, 기업문화, 기업지배구조의 역할 내지 기능에 대한 기본 원칙과 준수규정을 체계적으로 제시함.

○ 기업목적과 사업모델에 관한 원칙 및 준수규정을 정하면서, 주석에서 해당 기업이 장기적인 사업모델과 기업전략, 장기적인 재무성과 목표 등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이에 대한 설명과 분석을 연차보고서에 포함하도록 명시함.

□ Part 2, B는 이사회 구성 및 이사회 후보 추천을 중심으로, (B.1.) 이사회 구성, 승계 및 평가(Board Composition, succession and evaluation), (B.2.) 이사의 선임, 재선출 및 사임(Appointment, re-election and removal), (B.3.) 이사회 후보추천위원회(Nomination Committee)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정함.

○ 이사회 구성(B.1.) 등과 관련하여 권고적 모범실무(RBP, Recommended Best Practices)에서 이사회 정기적인 성과평가 실시, 사외이사의 이사회겸직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설명을 제시해야 한다고 정함.<sup>12)</sup>

○ 이사 선임(B.2.) 등과 관련하여, 기본원칙(principle)에서는 선임 이사를 선임하기 위한 공식적이고 투명한 절차를 갖추어야 함을 명시하고, 준수규정(CP, code provisions)에서 이사 선임을 위한 충분한 시간과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는 동시에, 모든 이사들은 매3년마다 최소 한 번씩 순환해야 하며(B.2.2.), 9년 이상 사외이사(independent non-executive director)로 선임되었던 이사를 추가로 선임하고자 할 경우, 해당 이사가 충분히 독립적인 비상임 이사이며, 이 이사가 재선임되어야 하는 근거를 설명한 자료를 주주들에게 제공하고, 주주의 승인 절차를 거치도록 하며(B.2.3.), 모든 사외이사가 발행회사에서 9년 이상 활동하고 있을 때, 각 이사들의 재임기간을 공시하고, 다가오는 정기주주총회에서 선임 사외이사를 선임해야 한다고 명시함(B.2.4.).<sup>13)</sup>

○ 이사회 후보추천위원회(B.3.)와 관련하여, 해당 추천위원회는 이사회 구성과 이사 선임에 관한 원칙을 준수하도록 하고, 이사회 후보 추천을 위한 서면이나 참고자료 작성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준수규정에서 정함.<sup>14)</sup>

□ Part 2, C는 이사의 책임, 위임 및 이사회 절차에 대한 것으로 (C.1.) 이사의 책임(Responsibilities of directors), (C.2.) 이사회 의장 및 대표이사(Chairman and Chief Executive), (C.3.) 경영기능(Management Function), (C.4.) 이사회 내 위원회(Board Committee), (C.5.) 이사회 절차 진행 및 정보 제공·정보접근, (C.6.) 회사 간사역(Company Secretary)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정함.

○ 이사의 책임(C.1.)과 관련하여 사외이사(non-executive directors)의 책임과 역할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정함.<sup>15)</sup>

12) B.1. Board Composition, succession and evaluation-Recommended Best Practices B.1.5.-B.1.6.

13) B.2. Appointment, re-election and removal, Code Provisions B.2.1.-B.2.4.

14) B.3. Nomination Committee, Code Provisions B.3.1.-B.3.4.

15) C.1. Responsibilities of Directors, Code Provisions C.1.1.-C.1.8.

- 이사회 출석 의무(C.1.1.), 이사회내에 잠재적인 이해관계 충돌이 발생할 경우 주도적 역할 수행(C.1.2.), 공공기관 등 검직에 대한 공시의무(C.1.5.) 등
  - 이사회 의장 및 대표이사(C.2.) 등과 관련하여, 기업운명을 이사회 경영과 회사의 일상업무 경영으로 구분하고, 양자의 역할에 따라 그 인적 구성을 이사회 의장(Chairman)과 대표이사(chief executive)로 분리하여 수행하도록 정함(C.2.1.).
  - 이사회의 경영기능(C.3.)에서는 기업 경영을 위한 이사회 승인과 위임 등에 대하여 정하고, 이사회 내 위원회(C.4.)에서는 이사회 내 위원회의 구성과 역할에 대하여 정함.<sup>16)</sup>
  - 이사회 개최 및 이사들에 대한 정보제공·정보접근(C.5.)과 관련하여, 준수규정에서는 이사회가 분기별로 1년에 최소 4회의 이사회를 개최해야 하며, 이사들의 참석을 위하여 최소 2주의 공지를 하도록 하며, 이사회 안건 논의시 이해관계 충돌(conflict of interest)이 있을 경우, 해당 안건은 서면검토가 아니라 반드시 현장 안건으로 논의되어야 하며, 이해관계없는 사외이사가 반드시 해당 이사회에 참석해야 함.<sup>17)</sup>
- Part 2, D는 감사,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Audit, internal control and risk management)에 관한 내용으로, (D.1.)재무보고, (D.2.)위험관리 및 내부통제, (D.3.)감사위원회(Audit Committee)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정함.
- 재무보고(D.1.)와 관련하여 이사회는 회사의 성과와 현재 상황 및 전망에 대하여 명료한 평가결과를 제시해야 한다는 기본원칙과 함께, 기업지배구조 보고서에서 회계작성에 대한 이사의 책임과 거래소 연차/반기보고서 및 기타 재무보고 관련한 정보제공에 관한 준수규정(Code Provisions)을 세부적으로 제시함.<sup>18)</sup>
    - 권고적 모범실무(Recommended Best Practices)에서는 분기 종료 후 45일 이내에 분기별 재무결과를 발표·공시하도록 하고 주주가 발행회사의 실적, 재무상태 및 전망을 평가할 수 있도록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함.<sup>19)</sup>
  - 위험관리 및 내부통제(D.2.)와 관련하여, 이사회는 발행회사의 전략적 목표 달성을 위해 감수할 위험의 성격과 범위를 평가하고 결정하며, 효율적인 위험관리와 내부통제시스템을 수립하고 유지·보장할 책임이 있

16) C.4. Board Committee, Code Provisions C.4.1.-C.4.2.

17) C.5. Conduct of board proceedings and supply of and access to information, Code Provisions C.5.1.-C.5.10.; 회사 간사역(Company Secretary)은 C.6.에서 다루고 있으나, 이는 영국, 홍콩 회사법상의 제도로서 우리 회사법에서는 다루지 않고 있으므로 본 글에서는 제외함

18) D.1. Financial Reporting, Code Provisions D.1.1.-D.1.4.

19) D.1. Financial Reporting, Recommended Best Practices, D.1.5.-D.1.6.

으며, 특히 이러한 위험에는 E.S.G.와 관련된 중대한 위험(material risks relating to ESG<sup>20</sup>)이 포함됨.<sup>21)</sup>  
 - 이사회는 발행회사의 위험관리 및 내부통제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감독하고, 해당 시스템의 효과성에 대한 검토를 매년 확인해야 하며, 다음의 사항들을 기업지배구조 보고서에 포함하여 주주에게 보고해야 함<sup>22)</sup>

- 중요한 위험의 식별, 평가, 관리 프로세스
- 위험관리 및 내부통제 시스템의 주요 특징
- 이사회 위험관리 및 내부통제 시스템 책임
- 내부정보의 취급 및 유포에 대한 절차 및 내부통제

- 이사회는 연차검토를 통해, E.S.G. 위험을 포함한 중대한 위험의 성격과 범위, 사업 및 외부환경의 변화, E.S.G. 위험을 포함한 경영진의 지속적인 위험관리 및 내부통제 시스템 모니터링 범위와 품질 등을 고려해야 함<sup>23)</sup>

○ 감사위원회(D.3.)와 관련하여, 이사회는 재무보고, 위험관리 및 내부통제 원칙을 준수하기 위한 공식적이고 투명한 제도를 마련해야 하며, 거래소 상장규정에 근거하여 설립된 감사위원회는 명시적인 운영기준을 갖추어야 한다는 기본원칙<sup>24)</sup>과 함께, 준수규정에서 감사위원회의 회의록 보관 및 발행회사의 감사법인 구성원(partner)의 감사위원회 선임 금지(2년간)<sup>25)</sup>, 감사위원회의 재무정보 검토 기준 등을 제시함<sup>26)</sup>

□ Part 2, E와 F는 이사의 보수(Remuneration)와 주주관여(shareholder engagement)와 관련하여, 이사의 보수 책정 및 공시의 수준과 구성, 주주와의 효율적인 의사소통과 주주총회 운영 등에 대하여 정함

○ 이사의 보수 및 공시의 수준 등

- 이사의 보수책정에 관한 기본원칙과 보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역할에 대하여 정함<sup>27)</sup>
- 보수위원회가 동의하지 않는 보수나 보상약정을 승인할 경우 이를 기업지배구조 보고서에 공시하도록 하

20) HKEX E.S.G. Reporting Guide Appendix 27.

21) D.2. Risk management and Internal Control, Principle D.2.

22) D.2. Risk management and Internal Control, Code Provisions D.2.1.:D.2.4.

23) D.2. Risk management and Internal Control, Code Provisions D.2.3.

24) D.3. Audit Committee, Principle D.3.

25) D.3. Audit Committee, Code Provision. D.3.2.

26) 감사위원회는 재무보고 판단 검토시, 회계정책 및 관행의 변경, 감사로 인한 중대한 조정, 주요 판단 쟁점, 계속기업가치 검토 조건, 회계기준 준수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검토하도록 함. D.3. Audit Committee, Code Provision. D.3.3.

27) E.1. The level and make-up of remuneration and disclosure, Code Provisions, E.1.1.-E.1.5.

고, 이사의 보수는 기업 및 이사 개인의 성과와 연계되도록 하며, 사외이사의 독립성 확보를 위하여, 사외 이사에게는 성과 관련 요소가 포함된 주식 기반의 보수나 보상(스톡옵션 등)을 부여해서는 안됨을 권고적 모범실무에서 명시함.<sup>28)</sup>

- 주주와의 효율적인 의사소통을 위하여, 기본원칙에서 이사회는 주주와의 소통 및 주주 관여를 장려해야 할 책임이 있음<sup>29)</sup>을 확인하고, 발행회사가 배당금 지급 관련 정책을 연차보고서에 공개하도록 하는 한편,<sup>30)</sup> 권고적 모범실무에서 (a)유형별 주주 세부정보 및 총 소유지분, (b)다음 회계연도의 주요 주주총회 날짜 표시, (c)주요 공개유동주식 비율, (d)각 고위 경영진이 보유한 주식수 등을 기업지배구조 보고서에 포함하도록 하는 권고적 모범실무 규정도 함께 두고 있음.<sup>31)</sup>

[표 2] HKEX 기업지배구조 모범기준 Part 2(우수기업지배구조원칙, CP 및 RBP)의 구성체계

A. CORPORATE PURPOSE, STRATEGY AND GOVERNANCE			
	Principle	CP (Code Provision)	RBP (Recommended Best Practices)
A.1 Corporate strategy, business model and culture	○	○	×
A.2 Corporate Governance Functions	○	○	×
B. BOARD COMPOSITION AND NOMINATION			
B.1 Board composition, succession and evaluation	○	○	○
B.2 Appointments, re-election and removal	○	○	×
B.3 Nomination Committee	○	○	×
C. DIRECTORS' RESPONSIBILITIES, DELEGATION AND BOARD PROCEEDING			
C.1 Responsibilities of director	○	○	×
C.2 Chairman and Chief Executive	○	○	×
C.3 Management function	○	○	×

28) E.1. The level and make-up of remuneration and disclosure, Recommended Best Practices, E.1.6.-E.1.9.

29) F. Shareholders Engagement, F.1. Effective communication, Principle.

30) F.1. Effective communication, Code Provisions F.1.1.

31) F.1. Effective communication, Recommended Best Practices, F.1.2.-F.1.5.

C.4 Board Committee	○	○	×
C.5 Conduct of board proceedings and supply of and access to information	○	○	×
C.6. Company Secretary	○	○	
<b>D. AUDIT, INTERNAL CONTROL AND RISK MANAGEMENT</b>			
D.1 Financial reporting	○	○	○
D.2 Risk management and internal control	○	○	○
D.3 Audit Committee	○	○	×
<b>E. REMUNERATION</b>			
E.1 The level and make-up of remuneration and disclosure	○	○	○
<b>F. SHAREHOLDERS ENGAGEMENT</b>			
F.1.Effective communication	○	○	○
F.2.Shareholders meeting	○	○	×

## 2. HKEX E.S.G. 보고 가이드의 체계와 주요 내용

### 가. 도입부(Part A: Introduction)

- E.S.G. 보고 가이드는 의무공시요건(mandatory disclosure requirements)과 “원칙준수·예외설명”규정 (“comply or explain” provisions) 두 가지 수준의 공시 의무를 부여하고 있음.
  - 의무공시요건은 E.S.G. 보고 가이드의 Part B 부분에 명시되어 있으며, 발행인은 해당 정보를 E.S.G. 보고서에 기한 내에 반드시 공시하여야 함.
- “원칙준수·예외설명”규정은 E.S.G. 보고 가이드의 Part C 부분에 명시되어 있으며, 발행인은 해당 정보를 E.S.G. 보고서에 공시하여야 하며, 만약 공시하지 않을 경우에 그에 따른 합당한 이유를 설명하여야 함.
  - 만약 합당한 이유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할 경우에는 상장규정 위반에 해당하여 거래소 제재를 받을 수 있음.



□ 발행인은 사업보고서 공시 기간과 동일한 기간 내에 E.S.G. 보고서를 매년 발행하여야 하며, E.S.G. 보고서를 사업보고서에 포함하여 공시할 수도 있고 별도의 보고서로 따로 공시할 수도 있음.

○ E.S.G. 보고서는 형식에 관계없이 거래소 웹사이트와 발행인 웹사이트에 게시되어야 함.

□ 발행인은 HKEX의 E.S.G. 가이드 이외에 관련 산업과 섹터에서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기존의 E.S.G. 보고 가이드를 참조할 수 있음.

○ 또한 “원칙준수-예외설명” 규정과 유사한 규정을 포함하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E.S.G. 보고 가이드를 채택할 수도 있음.

□ 보고의 일반원칙(Reporting Principles)

○ 중요성(Materiality): 이사회가 결정한 E.S.G. 안건이 투자자 및 기타 이해관계자에게 보고되어야 할 만큼 충분히 중요해야 함.

○ 정량성(Quantitative): 발행인은 과거 데이터와 관련된 KPIs(key performance indicators)를 측정 가능하게 제시하여야 하고, 특정 지표로부터 영향을 줄이기 위해 목표(실제 수치 또는 방향성, 미래 예측 진술일 수 있음.)를 설정해야 함.

- 양적 정보에는 목적 및 영향을 설명하고 필요한 경우 비교 데이터를 제공하여야 함.

○ 균형성(Balance): E.S.G. 보고서는 발행인의 성과에 대한 공정한 자료를 제공해야 하며, 독자의 결정이나 판단에 부적절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에 대한 선택, 누락 또는 표시 형식을 피해야 함.

○ 일관성(Consistency): 발행인은 시간의 경과에 따른 E.S.G. 정보의 의미 있는 비교를 위해 일관된 방법론을 사용해야 함.

□ 이사회 보고서의 사업 검토 부분 중 E.S.G. 논의의 보완

○ 「주거래소 상장 규칙」 별표 16 제28조(2)(d)에 따라, 각 회계연도에 대한 발행사의 이사회 보고서에는 「회사법」 별표 5에 따른 사업 검토 내용을 수록하여야 함. 사업 검토 내용에는 발행사 사업의 발전, 성과 또는 위상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 다음과 같은 정보가 포함되어야 함.

(i) 발행사의 환경 정책 및 성과에 관한 논의 내용

(ii) 발행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관련 법규에 대한 발행사의 준수에 관한 논의 내용

- (iii) 발행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발행사의 성공을 좌우하는 발행사의 직원, 고객, 공급업자 및 그 밖의 관련자와 발행사의 주요 관계에 관한 설명

#### 나. 의무공시요건(Part B: Mandatory Disclosure Requirements)

□ 지배구조(Governance Structure): 다음 요소를 포함하는 이사회의 진술

- E.S.G. 이슈에 대한 이사회의 관리·감독 공시
- 이사회의 E.S.G. 경영접근방식 및 전략 (중요한 E.S.G. 관련 이슈(발행인의 사업에 대한 위험을 포함)에 대한 평가, 우선순위 선정 및 관리에 적용되는 프로세스를 포함)
- 이사회가 E.S.G. 목표 달성을 검토하는 방법이 발행인의 사업 목표와 어떻게 연관이 되는지에 대한 설명

□ 보고 원칙(Reporting Principles): E.S.G. 보고서 작성을 위한 일반적인 보고 원칙 중 중요성(Materiality), 정량성(Quantitative), 일관성(Consistency)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에 대한 설명이 포함되어야 함.

- 중요성: E.S.G. 보고서에는 다음 사항을 공개하여야 함.
  - (i) 중요한 E.S.G. 요소의 식별 절차 및 그러한 요소의 선정 기준
  - (ii)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경우, 식별된 중요 이해관계자에 관한 내용 및 발행사의 이해관계자 참여 절차 및 그 결과
- 정량성: 배출 및 에너지 소비(해당되는 경우)의 보고에 사용된 기준, 방법, 가정, 계산 도구 및 환산 계수의 출처를 공개하여야 함.
- 일관성: 발행사는 보고서 작성에 사용한 방법이나 KPI의 변동이나 유의미한 비교에 영향을 미치는 그 밖의 관련 요소를 E.S.G. 보고서에 공개하여야 함.

□ 보고 범위(Reporting Boundary): E.S.G. 보고서의 보고 범위를 설명하고 E.S.G. 보고서에 포함된 법인 또는 운영기관을 식별하는 데 사용되는 프로세스를 설명하여야 하며, 만약 보고 범위에 변경이 있는 경우 발행인은 변경 이유와 내용을 설명해야 함.

### 다. “원칙준수·예외설명” 규정(Part C: “Comply or explain” Provisions)

□ “원칙준수·예외설명”규정은 주요영역(Subject Areas), 세부영역(Aspects), 일반공시(General Disclosures) 및 KPIs로 나누어 준수하거나 설명하여야 함.

○ 원칙준수·예외설명 규정이 주로 적용되는 영역은 환경과 사회임.

- 환경(Environmental)의 세부 영역: ① 오염물질 배출(Emissions), ② 자원의 사용(Use of Resources), ③ 환경과 천연자원(The Environment and Natural Resources), ④ 기후변화(Climate Change)

- 사회(Social)의 세부 영역 (1) 고용 및 노동 관행(Employment and Labour Practices), (2) 운영 관행(Operating Practices), (3) 지역사회(Community)로 구분

(1) 고용 및 노동 관행: ① 고용(Employment), ② 보건 및 안전(Health and Safety), ③ 개발 및 훈련(Development and Training), ④ 근로 기준(Labour Standards)

(2) 운영 관행: ① 공급망 관리(Supply Chain Management), ② 제조물책임(Product Responsibility), ③ 부정부패(corruption)

(3) 지역사회: 지역사회 투자(Community Investment)

### 라. 위반시 제재 방법

E.S.G. 가이드를 준수하지 않는 것은 HKEX의 상장규정을 위반하는 것으로, 경우에 따라 HKEX로부터 징계 조치, 경고 등과 같은 제재를 받을 수 있음.

[표 2] Part C : “원칙준수-예외설명”규정

A. 환경 영역	
세부영역	일반공시와 KPIs
<b>A1: 오염물질 배출</b>	<p><b>일반 공시</b>에 관한 정보:                      (a) 정책                      (b) 발행인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관련 법률 및 규정의 준수                      대기 및 온실가스 배출, 물과 땅으로의 배출, 유해 및 비유해 폐기물 생성과 관련된다.                      참고: 대기 배출에는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및 국가 법률 및 규정에 따라 규제되는 기타 오염 물질이 포함된다.                      온실가스에는 이산화탄소, 메탄, 아산화질소, 수소불화탄소, 과불화탄소 및 육불화황이 포함된다.                      유해 폐기물은 국가 규정에서 정의한 것이다.</p>
	KPI A1.1   배출 유형 및 해당 배출 데이터
	KPI A1.2   직접(범위 1) 및 에너지 간접(범위 2) 온실 가스 배출량(톤 단위)과 해당되는 경우 밀도(예: 생산량 단위당, 시설당)
	KPI A1.3   생성된 총 유해 폐기물(톤 단위) 및 해당되는 경우 밀도(예: 생산량 단위당, 시설당)
	KPI A1.4   생산된 총 비유해 폐기물(톤 단위) 및 해당되는 경우 밀도(예: 생산량 단위당, 시설당)
	KPI A1.5   배출 목표 설정 및 이를 달성하기 위해 취한 조치에 대한 설명
	KPI A1.6   유해 및 비유해 폐기물 처리 방법에 대한 설명, 감소 목표 설정 및 이를 달성하기 위해 취한 조치에 대한 설명
<b>A2: 자원의 사용</b>	<p><b>일반 공시</b>                      에너지, 물 및 기타 원자재를 포함한 자원의 효율적인 사용에 관한 정책                      참고: 자원은 생산, 저장, 운송, 건물, 전자 장비 등에 사용될 수 있다.</p>
	KPI A2.1   유형(예: 전기, 가스 또는 석유)의 총 직간접 에너지 소비량(kWh in '000s) 및 밀도(예: 생산량 단위당, 시설당)
	KPI A2.2   총 물 소비량 및 밀도(예: 생산량 단위당, 시설당)
	KPI A2.3   에너지 사용 효율 목표 설정 및 이를 달성하기 위해 취한 조치에 대한 설명
	KPI A2.4   목적에 맞는 물 조달 문제 여부, 물 효율 목표 설정 및 이를 달성하기 위해 취한 조치에 대한 설명
	KPI A2.5   완제품에 사용된 총 포장 재료(톤 단위) 및 해당되는 경우 생산량 단위당 참조

A3: 환경과 천연자원	<b>일반 공시</b> 발행인이 환경 및 천연자원에 미치는 중대한 영향을 최소화하는 정책	
	KPI A3.1	사업이 환경 및 천연자원에 미치는 중대한 영향과 이를 관리하기 위해 취한 조치에 대한 설명
A4: 기후변화	<b>일반 공시</b> 발행인에게 영향을 미치거나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기후 관련 문제의 식별 및 완화에 관한 정책	
	KPI A4.1	영향을 미친 중요한 기후 관련 안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안건, 발행인 및 이를 관리하기 위해 취한 조치에 대한 설명
<b>B. 사회 영역</b>		
<b>세부영역</b>	<b>일반공시와 KPIs</b>	
<b>고용 및 노동 관행</b>		
B1: 고용	<b>일반 공시</b> 에 관한 정보: (a) 기본정책 (b) 발행인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관련 법률 및 규정의 준수 보상 및 해고, 채용 및 승진, 근무 시간, 휴식 시간, 평등한 기회, 다양성, 차별 금지 및 기타 혜택 및 복지에 관련된다.	
	KPI B1.1	성별, 고용 유형(예: 정규직 또는 시간제), 연령 그룹 및 지역별 전체 인력
	KPI B1.2	성별, 연령 그룹 및 지역별 직원 이직률
B2: 보건 및 안전	<b>일반 공시</b> 에 관한 정보: (a) 기본정책 (b) 발행인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관련 법률 및 규정의 준수 안전한 작업 환경을 제공하고 직업상의 위험으로부터 직원을 보호하는 것과 관련된다.	
	KPI B2.1	보고 연도를 포함하여 지난 3년 동안의 업무 관련 사망 건수 및 발생률
	KPI B2.2	업무상 부상으로 인한 손실일수
	KPI B2.3	채택된 산업 보건 및 안전 조치와 그것들의 실행 및 모니터링 방법에 대한 설명
B3: 개발 및 훈련	<b>일반 공시</b> 직장에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한 직원의 지식 및 기술 향상에 관한 정책, 훈련 활동에 대한 설명참고: 훈련은 직업 훈련을 의미하며, 여기에는 고용주가 제공하는 내부 및 외부 과정이 포함될 수 있음.	
	KPI B3.1	성별 및 직원 범주(예: 고위 경영진, 중간 경영진)별로 교육을 받은 직원의 비율
	KPI B3.2	성별 및 직원 범주별 직원 1인당 평균 교육 시간

B4: 근로 기준	<b>일반 공시에 관한 정보:</b> (a) 기본 정책 (b) 발행인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관련 법률 및 규정의 준수 아동 및 강제 노동 방지와 관련됨.	
	KPI B4.1	아동 및 강제 노동을 피하기 위한 고용 관행을 검토하는 조치에 대한 설명
	KPI B4.2	발견 시 그러한 관행을 제거하기 위해 취한 조치에 대한 설명
<b>운영 관행</b>		
B5: 공급망 관리	<b>일반 공시</b> 공급망의 환경 및 사회적 위험 관리에 관한 정책	
	KPI B5.1	지역별 공급업체 수
	KPI B5.2	공급업체 참여와 관련된 관행, 관행이 실행되고 있는 공급업체의 수와 그것들의 실행 및 모니터링 방법에 대한 설명
	KPI B5.3	공급망을 따라 환경 및 사회적 위험을 식별하는 데 사용되는 관행과 이러한 위험과 그것들의 실행 및 모니터링 방법에 대한 설명
	KPI B5.4	공급업체를 선택할 때 환경적으로 선호되는 제품 및 서비스를 홍보하는 데 사용되는 관행과 그것들의 실행 및 모니터링 방법에 대한 설명
B6: 제조물 책임	<b>일반 공시에 관한 정보:</b> (a) 기본 정책 (b) 발행인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관련 법률 및 규정의 준수 건강 및 안전, 광고, 라벨링 및 제공된 제품 및 서비스와 관련된 개인 정보 보호 문제 및 보상 방법에 관련됨.	
	KPI B6.1	안전 및 보건상의 이유로 리콜 대상으로 판매되거나 배송된 총 제품의 비율
	KPI B6.2	접수된 제품 및 서비스 관련 불만 건수 및 처리 방법
	KPI B6.3	지적 재산권의 준수 및 보호와 관련된 관행에 대한 설명
	KPI B6.4	품질 보증 프로세스 및 회수 절차에 대한 설명
	KPI B6.5	소비자 데이터 보호 및 개인 정보 보호 정책과 그것들의 실행 및 모니터링 방법에 대한 설명

<b>B7: 부정부패</b>	<b>일반 공시에 관한 정보:</b> (a) 기본정책 (b) 발행인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관련 법률 및 규정의 준수 뇌물, 착취, 사기 및 자금세탁과 관련됨.	
	KPI B7.1	보고 기간 동안 발행인 또는 발행인의 임직원을 상대로 제기된 부패 행위와 관련하여 종결된 소송 건수 및 그 결과
	KPI B7.2	예방 조치 및 내부 고발 절차와 그것들의 실행 및 모니터링 방법에 대한 설명
	KPI B7.3	이사 및 직원에게 제공되는 반부패 교육에 대한 설명
<b>지역사회</b>		
<b>B8: 지역사회 투자</b>	<b>일반 공시</b> 발행인이 사업하는 지역의 요구를 이해하고 해당 사업이 지역의 이익을 고려하도록 하기 위한 지역사회참여 정책	
	KPI B8.1	중점 지역의 기여(예: 교육, 환경 문제, 노동 수요, 건강, 문화, 스포츠)
	KPI B5.2	중점 지역에 기여한 자원(예: 돈 또는 시간)

## IV. 시사점

- HKEX의 E.S.G. 보고 가이드가 시장과 협의를 통해 2015년 HKEX의 메인보드(대기업) 상장규정, 2020년 GEM(중소기업) 상장규정에 도입된 점은 향후 E.S.G. 보고 및 공시 관련하여 우리 법제 및 정책상으로도 시사하는 바가 큼.
  - HKEX에서도 2012년 최초 도입시에는 자율규제이었지만, 현재 HKEX의 E.S.G. 보고 가이드는 상장규정의 구성부분이기 때문에 위반시 HKEX로부터 징계 조치, 경고 등과 같은 제재를 받을 수 있음.
    - 따라서 HKEX의 메인보드와 GEM에 상장한 기업들은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들도 E.S.G. 보고 가이드를 통해 국제적 수준에 해당하는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공시를 하여야 함.
  - 국내에서도 2021년 한국거래소에서 'ESG 정보공개 가이드선'을 공표하였지만 2025년까지 권고에 불과한 자율공시이기 때문에 상장기업들의 준수 의무는 거의 없는 상태임.
    - 현재 국내 한국거래소는 자산규모 1조 원 상장회사에 한해서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공시를 의무화 하였고, 2024년 자산규모 5천억 원, 2026년에 모든 상장회사에 의무화를 예고하고 있음.
  
- HKEX의 E.S.G. 보고 가이드와 같이 E.S.G. 관련 보고 및 공시의 내용을 의무공시요건(mandatory disclosure requirements)과 “원칙준수·예외설명”규정(“comply or explain” provisions) 두 가지 수준의 공시 의무를 부여하여 기업이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함.
  - 또한, HKEX가 발행인에게 E.S.G. 보고 가이드 이외에 관련 산업과 섹터에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기존 E.S.G. 보고 가이드를 참조할 수 있게 하였고, “원칙준수·예외설명”규정과 유사한 규정을 포함하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E.S.G. 보고 가이드를 채택할 수도 있게 하여 기업들에게 선택의 자율성도 보장해줄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 거래소 시장에서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HKEX의 기업지배구조 모범기준은 “원칙준수·예외설명” 규정(“comply or explain” provisions)을 기반으로 선택의 자율성을 보장하였으며, 기본 원칙 외에도 권고적 모범실무(RBP)를 제공하여 기업이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 역시 좋은 참고가 될 수 있음.

## 참고문헌

## REFERENCES

- 남길남, “금융중심지 기능과 증권거래소의 경쟁력”, 자본시장포커스, 2020-17호(2020.08.)
- 박준태, “지속가능 성장을 위한 ESG 생태계 조성 및 입법정책 과제”, 국회입법조사처(2021.09)
- 관계부처 합동, “K-ESG 가이드라인 v.1.0”(2021.12.)
- UN PRI “ESG DISCLOSURE IN CHINA: MARKET READINESS AND PRI INVESTOR SURVEY”(2019)
- Syren JOHNSTONE and Say H GOO, “Report on Improving Corporate Governance in Hong Kong – A comparative based study –”, The Hong Kong Institute of Certified Public Accountants(2017.12.)
- 한국E.S.G.기준원 홈페이지(<https://www.cgs.or.kr>)
- 홍콩증권거래소 홈페이지(<https://www.hkex.com.hk>)
- KRX E.S.G. 포털(<https://esg.krx.co.kr/>)
- UN PRI 홈페이지(<https://www.unpri.org>)

이슈페이퍼 23-19-④

## 홍콩거래소(HKEX)의 기업지배구조 모범기준과 E.S.G. 보고 가이드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발행일 2023년 9월 20일

발행인 한영수

발행처 한국법제연구원

세종특별자치시 국책연구원로 15 (반곡동, 한국법제연구원)

T. 044)861-0300 F. 044)863-9915

등록번호 1981. 8.11. 제2014-000009호

<http://www.klri.re.kr>

ISBN 979-11-92875-95-8

95360

